

정부 육아지원 정책 안내

CHILD CARE SUPPORT POLICY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차례

간략하게 보는 정부 육아지원 정책 04

정책부문별

1 비용지원

가정양육수당 12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42
만 0~2세 보육료 14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43
만 3~5세 누리과정 15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45
시간 연장형 보육료 16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46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 사업 18	다문화 보육료 47
아이돌봄 서비스 19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48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 22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49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23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50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24	통합문화이용권 51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25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7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29	
취학 전 아동실명예방 3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34	
언어발달 지원 사업 3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37	
장애아 보육료 38	
장애아동수당 39	
입양아동 양육수당 41	



정책부문별

2 서비스 지원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 56
다문화 방문교육 서비스 58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60

3 돌봄시간지원

모성보호육아(출산 전·후 휴가) 64
배우자 출산 휴가 66
육아휴직급여 6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68

4 기타

입소대기 신청 72
유아교육 진흥원 운영 75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76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78

영유아 연령별

1. 출산 전·후 82
2. 신생아 86
3. 3개월 112
4. 6개월 113
5. 만 3세 114
6. 만 6세 118
7. 기타 120

부록

정책정보제공 웹사이트 139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웹사이트 139
유아교육진흥원 및 유아체험교육원 웹사이트 142
전국 장난감 대여 기관 주소 143



비용 지원

정책·월(연)령(만)	0개월	3개월	6개월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10세	12세	
가정양육수당															
만 0~2세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시간 연장형 보육료															
시간차등형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국가예방접종지원															
6세 미만 영유아건강검진															
육아휴직급여															
취학전 아동실명 예방															
다문화가정 보육료															

[illegible]



정책 부문의별

비용지원
서비스 지원
돌봄시간지원
기타



비용지원

가정양육수당
만 0~2세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시간 연장형 보육료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 사업
아이돌봄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취학 전 아동실명예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언어발달 지원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장애아 보육료
장애아동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다문화 보육료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통합문화이용권



1 비용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 기준 0~84개월 미만)을 돌보는 경우
- 농어촌 양육수당: 취학 전 84개월 미만 아동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가정 양육 아동

지원내용

-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급
 - 24개월 미만: 150,000원 지급
 - 24개월 이상~84개월 미만: 100,000원 지급
-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 양육수당
 - 36개월 미만: 200,000원 지급
 - 36개월 이상~만 5세(최대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급
- 농어촌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급
 -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77,000원 지급
 -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156,000원 지급
 - 36개월 이상~48개월 미만: 129,000원 지급
 - 48개월 이상~84개월 미만: 100,000원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만 0~2세 보육료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아
- 유아학비, 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제외

지원내용

- 만 0세아: 418,000원
- 만 1세아: 358,000원
- 만 2세아: 304,000원

지원기준

- 무상보육 기간은 3년 초과 불가함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문의처 |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대상

-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아
- 취학대상 아동(2009년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하여 유예한 1년에 한해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을 신청일 기준으로 220,000원 지원

지원기준

-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안되며, 부모의 서비스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무상교육 기간은 3년 초과 불가함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직접 신청

| 문의처 |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233
- 에듀콜센터 1544-0079

| 관련 사이트 |

- 교육부 www.moe.go.kr
- e-유치원 chidschool.moe.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교육부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

- 만 0~2세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취학 전)를 지원하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법정저소득층 취학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 야간보육료: 주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 24시간 보육료: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은 물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지원하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시간 연장형 보육

- 매월 지원 한도액: 60시간, 시간 연장보육 이용시간을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월 단위 합산 후, 잔여분이 30분 이상일 경우 1시간으로 계산, 30분 미만 절사)
- 보육시간: 기준시간 초과한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지원단가(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일반아동 시간당 3,000원 지원(지원한도액: 180,000원, 지원율: 기준액×100%)/장애아동: 시간당 4,000원 지원(지원 한도액: 240,000원, 지원율: 기준액×100%)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출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 보육

- 주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

- 보육시간: 19:30~익일 07:30
- 지원단가: 만 0세 418,000원/만 1세 368,000원/만 2세 304,000원/만 3세 이상 220,000원

- 24시간 보육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
- 보육시간: 07:30~익일 07:30,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 07:30) 동시 이용
- 지원단가: 만 0세 627,000원/만 1세 552,000원/만 2세 456,000원/만 3세 이상 330,000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

-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해당 어린이집 통해 신청

| 문의처 |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 아이사랑보육포털 1661-9361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 사업

지원대상

- 종일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

지원내용

- 기본형(월 40시간): 시간제보육료 이용단가 4,000원 중 2,000원
- 맞벌이형(월 80시간): 시간제보육료 이용단가 4,000원 중 3,000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전화, 인터넷(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 문의처 | 시간제보육 상담 1661-9361

| 관련 사이트 |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소득활동, 다자녀양육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정부지원 및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 취업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
-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3명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이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한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비장애아 돌봄
- 그 외 양육에 부담이 있는 가정
 - 부 또는 모가 입중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중일 때
 - 부 또는 모가 재학 중이거나 입중 가능한 취업 학원을 수강할 때

선정기준

- 아동의 연령 기준과 가구 소득 기준 고려 차등 지원
- 자녀양육 정부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서비스 이용시간 및 아동 수에 따라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 금액 다름
-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 가능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시간제한 없이 전액 부모 부담(시간당 6,500원)

지원형태(다음 표 참조)

- 시간제
- 종일제

※ 시간제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처
연령	• 지원대상 -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적용	• 지원내용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 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 지원기준 - 어린이집 휴원 등 미운영, 아동질병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관련문서 확인 후 지원가능 - 두 자녀 이상 가정에서 종합형 서비스 이용 시, 동일 시간에 한 아동은 종합형, 다른 아동은 시간제 돌봄(일반형) 별도 신청 불가	• 절차 및 방법 - 정부지원 가구 1)정부지원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 부모 및 양육권자 직접 신청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2)소득조사(읍·면·동) 3)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 4)서비스 이용 신청 및 제공 - 아이돌봄 홈페이지 idolbom.go.kr 회원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또는 관내 서비스 제공 기관에 신청 - 본인부담금 선(先)입금 후 이용가능(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 맞벌이 부부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 직장보험 가입자이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 5)사후관리(시·군·구, 서비스기관)
시간제	• 상세 지원기준(시간당 6,500원) - A형 '09.1.1. 이후 출생 아동 - 가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정부지원 4,875원, 본인부담 1,625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60~85% 이하 (정부지원 2,925원, 본인부담 3,575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85~120% 이하 (정부지원 1,625원, 본인부담 4,875원) -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6,500원) - B형 '08.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정부지원 4,225원, 본인부담 2,275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60~85% 이하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6,500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85~120% 이하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6,500원) -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6,500원)	• 지원내용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식사·간식 챙겨주기, 어린이집·학교·학원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등 (단, 가사활동 제외)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이용요금 - 시간당 6,500원(야간, 휴일 시간당 3,250원 추가) - 아동추가 할인을 적용: 돌봄 아동 2명 시 총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 할인 - 연 480시간 지원/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 문의처 - 아이돌봄 상담 대표전화 1577-2514 - 여성가족부 02-2100-6000 • 관련 사이트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index.jsp - 아이돌봄 지원사업 idolbom.go.kr
종합형	• 상세 지원기준(시간당 8,450원) - A형 '09.1.1. 이후 출생 아동 - 가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정부지원 4,875원, 본인부담 3,525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60~85% 이하 (정부지원 2,925원, 본인부담 5,475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85~120% 이하 (정부지원 1,625원, 본인부담 6,775원) -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8,400원) - B형 '08.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정부지원 4,225원, 본인부담 4,175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60~85% 이하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8,400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85~120% 이하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8,400원) -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8,400원)	• 지원내용 -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1회)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청소기 청소(1회)·결레질 하기, 아동 식사·간식 조리과 그에 따른 설거지 - 이용요금 - 시간당 8,450원(야간·휴일 시간당 3,250원 추가) - 아동추가 할인을 적용: 돌봄 아동 2명 시 총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 할인 - 시간제서비스(일반형) 시간 지원한도 내에서 차감	• 문의처 - 아이돌봄 상담 대표전화 1577-2514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02-2100-6000 • 관련 사이트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index.jsp - 아이돌봄 지원사업 idolbom.go.kr

※ 종일제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처
연령	• 지원대상 - 정부지원 및 서비스 우선 제공대상 가구의 3개월 이상~24개월 이하 아동	• 지원기준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의 경우,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불가 - 종일제 또는 보육교사형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중복 불가)	• 절차 및 방법 - 정부지원 가구 1)정부지원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 부모 및 양육권자 직접 신청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2)소득조사(읍·면·동) 3)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 4)서비스 이용 신청 및 제공 - 아이돌봄 홈페이지 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또는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 - 본인부담금 선(先)입금 후 이용 가능(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 맞벌이 부부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 직장보험 가입자이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 5)사후관리(시·군·구, 서비스기관)
영아 종일제	• 상세 지원기준(월 200시간 기준, 월 130만 원) - 가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정부지원 91만 원, 본인부담 39만 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60~85% 이하 (정부지원 65만 원, 본인부담 65만 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85~120% 이하 (정부지원 39만 원, 본인부담 91만 원) -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130만 원)	• 지원내용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영양, 건강, 위생,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 - 월 130만 원, 시간당 6,500원 - 야간휴일 시간당 3,250원 추가 - 월 200시간 지원/1일 최소 4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아동추가 할인을 적용: 돌봄 아동 2명 시 총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 할인	• 문의처 - 아이돌봄 상담 대표전화 1577-2514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02-2100-6000 • 관련 사이트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index.jsp - 아이돌봄 지원사업 idolbom.go.kr
보육교사형	• 상세 지원기준(월 200시간 기준, 월 156만 원) - 가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정부지원 91만 원, 본인부담 65만 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60~85% 이하 (정부지원 65만 원, 본인부담 91만 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85~120% 이하 (정부지원 39만 원, 본인부담 117만 원) -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156만 원)	• 지원내용 -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봄모의 월간활동계획에 따른 영아표준 돌봄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 - 월 156만 원, 시간당 7,800원 - 야간휴일 시간당 3,250원 추가 -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지원 시간 지원/1일 최소 4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아동추가 할인을 적용: 돌봄 아동 2명 시 총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 할인	• 문의처 - 아이돌봄 상담 대표전화 1577-2514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02-2100-6000 • 관련 사이트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index.jsp - 아이돌봄 지원사업 idolbom.go.kr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

지원대상

- 법정 전염성 질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

지원내용

-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돌봄 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 시간당 7,800원으로 질병 완치 시까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50% 정부 지원
- 정부지원시간 차감 없음

지원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 또는 이용자 가정의 신청으로 우선 서비스 제공
- 추후 진단서(소견서) 및 처방전, 시설 이용 확인서(재학증명서포함)를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정부지원 가구

- ① 정부지원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 부모 및 양육권자 직접 신청 혹은 복지포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② 소득조사(읍·면·동)
- 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
- ④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제공
 - 아이돌봄 홈페이지 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또는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
 - 본인부담금 선(先)입금 후 이용가능(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 맞벌이 부부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 직장보험 가입자이면 복지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

⑤ 사후관리(시·군·구, 서비스기관)

- 정부미지원(본인부담) 가구: 아이돌봄 홈페이지 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센터로 신청

| 문의처 |

- 아이돌봄 상담 대표전화 1577-2514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02-2100-6000

| 관련 사이트 |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index.jsp
- 아이돌봄 지원사업 idolbom.mogef.go.kr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지원내용

- 보건소 및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거주지 무관)
- 2016년 지원대상 백신(16종): BCG(폐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생백신, 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A형간염, HPV(자궁경부암, 2016년 6월 예정)
- 2016년 미지원대상 백신: 결핵 경피용, 로타바이러스 등

추가 지원내용

- 예방접종기록 전산화를 통한 효율적 보관 및 관리
- 예방접종증명서 인터넷 발급(민원24 홈페이지에서 무료발급)
- 예방접종 확인 및 다음 접종 사전알림서비스(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함)
- 예방접종 안전관리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위탁 의료기관 방문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예방접종도우미 nip.cdc.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

지원내용

- 총 7차의 영유아건강검진(일반/구강검진)
- 검진 항목: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과 9종의 건강교육
- 일반 건강검진주기: 4~6개월/9~12개월/18~24개월/30~36개월/42~48개월/54~60개월/66~71개월
- 구강 건강검진주기: 18~29개월/생후 42~53개월/생후 54~65개월

검사비용: 본인부담 없음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① 건강검진 실시 방법/절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② 건강검진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 ③ 결과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과를 통보

| 문의처 |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 관련 사이트 |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검사(생후 48시간~7일 이내):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6종에 한해 신생아 전원에게 무료지원
 - 선천성대사 이상질환: 페닐케톤뇨증 환아,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호모시스틴뇨증 환아, 단풍당뇨증 환아, 갈락토스혈증 환아, 기타 선천성 대사이상증 환아를 포함
- 환아관리대상자: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 이상질환으로 진단되어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환아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용(20,000원/1인)
 - 검사항목: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6종
- 2차 정밀검사비용 지원: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 중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1인당 5만 원 범위 내 지원
-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제외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환 치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약제비 포함)의 경우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함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보건소에 신청
- 2차 정밀검사 경우:
 - ① 증빙서류(의료기관의 검사결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 청구
 - ② 시·군·구청장은 환아가 제출한 증빙서류 확인 후, 환아가 부담한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항목 제외)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아가사랑 www.agasarang.org
- G-Health www.g-health.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 미숙아: 출생시 2.5kg미만이거나,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신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일반신생아실 입원 미숙아는 제외)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 받은 환아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선정기준

-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 다자녀(3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중에서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기준

- 미숙아
 - ① 본인부담금 100만 원 미만: 전액(100%)
 - ② 100만 원 초과: 본인부담금 중 100만 원 제외 금액의 80% 적용 지원
 - ③ 500만 원 초과 시 500만 원까지는 ①, ② 기준을 적용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90%를 적용 지원
 - ④ 체중별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 5백만 원까지 지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을 차등 적용
 - 본인부담금 중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금액별 차등지원 기준
 - ① 지원 의료비가 1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 ② 지원 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③ 본인부담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은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500만 원까지는 ①, ② 기준을 적용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최고지원금액 까지만 지원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①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록
 - ② 입원 및 수술 등 의료비 발생 시 지원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제출서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문의처 |

-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G-Health www.g-health.kr
 - 아가사랑 www.agasarang.org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보장 가구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 가구의 신생아
-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소득수준 관계없음)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 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지원
- 가족 수 산정 방법
 - 난청조기진단 지원 대상 태아 포함
 - 주민등록 및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
 -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포함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에는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 수 모두 합산
 -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제외
- 보험료 산정 방법
 - 의료비 신청시점 기준(최근 월의 납부 확인서)
 -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될 경우, 정상 월분으로 평가(직장가입자의 경우 4월분에 연간 정산 보험료가 추가되어 고지되는 경우 있음)
 - 가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고, 6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에 등재된 경우에는 보험료 합산(맞벌이 등으로 양쪽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양쪽 보험료 합산(직장 가입자), 보험료 합산 및 등재 인원 모두 가족 수 합산(지역가입자)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외국 유학 등으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 자격회복 후 신청
- 수급증 확인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신생아청각선별검사 1인당 검사비 지원
 - 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AOAE) 10,000원
 -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 27,000원
 - AOAE와 AABR 동시 실시한 경우 AABR 검사비 27,000원
-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ABR)의 법정 본인부담금 지원(전문 협력의료기관 검사비)
 - 확진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선별검사인 AABR 또는 AOAE검사 지원 불가
 - 만 6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적용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여러 번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지원대상 가정에 쿠폰 지급
- 청각선별검사비 지급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함

신청기간

-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생후 1개월 이내
- 난청확진검사: 청각선별 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생후 3개월 이내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① 지원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 ② 쿠폰발급: 보건소에서 발급
- ③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검사기관에서 선별검사와 확진 검사
- ④ 검사비 청구: 검사기관이 보건복지부 사업지원팀에 검사비 청구
- ⑤ 검사기관 청구내역 통보: 보건복지부 사업지원팀이 보건소로 청구내역 통보
- ⑥ 검사비 지급: 보건소에서 검사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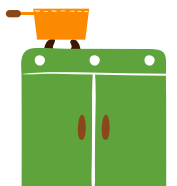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아가사랑 www.agasarang.org
- G-Health www.g-health.kr
- 건강정보포털 health.mw.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취학 전 아동실명예방

지원대상

- 가정시력검사(시력검진사업): 자기표현이 가능한 만 3세~6세
- 수술비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 가정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 가정(직장가입자일 경우 차량 소유가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자)

지원내용

- 가정시력검사(시력검진사업)
 - 가정용 시력검사도구 배부: 한국실명예방재단 → 전국보건소 → 유치원/어린이집 → 가정(시력검사 실시) → 어린이집에서 취합 2차 검사 대상자 선별 → 보건소에 통보
 - 2차 검사 대상자로 선별된 이후, 절차에 따라 재검진, 정밀검사 등이 실시됨
- 안질환(약시), 저시력 어린이 관리 사업
- 약시 치료중인 어린이 교육자료 및 가림치료용 패치배부
 - 약시 어린이 치료 순응율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 배부
 - 상담 및 약시 어린이 가림치료용 패치 무료지원(1년 중 6개월)
- 저시력 어린이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기구 대여
- 수술비지원사업: 안과 사전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 및 수술전·후 치료목적의 안경(연 2회, 특수처방안경 10만 원, 일반처방안경 5만 원 한도)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 ①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지원결정 전 수술비 지원 불가)
 - ② 실사 및 심사
 - ③ 서비스 결정
 - ④ 서비스 제공
- 가정시력검사: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개인이 신청 또는 복지부를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급

| 문의처 |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088, 1102

| 관련 사이트 | 한국실명예방재단 www.kfpb.org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지원대상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

선정기준

- 출산가정의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소득기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 출산(예정)여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
 - * 사산 및 유산 포함(단,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고, 의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산모 사망 시,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이 될 수 있는 2촌 이내 직계가족(산모의 배우자 등)이 신청한 경우도 지원
 -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가정방문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원기준

- 단태아: 10일
- 쌍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 20일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경과 후 바우처 자격 소멸)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신청, 인터넷(www.online.bokjiro.go.kr)

① 서비스 신청

② 보건소에서 조사

③ 도·시·군·구에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사회서비스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언어발달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의 서비스를 제공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수급자: 22만 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0만 원(본인부담금 2만 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18만 원(본인부담금 4만 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16만 원(본인부담금 6만 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① 지원신청 ② 소득재산 확인
③ 대상자 결정 및 통지 ④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송부 ⑤ 서비스 제공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0~12개월 영아

선정기준

- 기저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만 1세 미만인 영아를 둔 가구에 영아별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특정질병(치료) 혹은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 특정질병(치료):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HIV' 등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구 0~12개월 영아 1인당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기저귀 구매비용 월 64,000원 정액 지원
 - 조제분유: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월 86,000원 정액 지원
 - 기저귀+조제분유: 월 150,000원 정액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①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서류 제출
- ② 자격결정통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결과통보
- ③ 해당 시, 바우처 지급
- ④ 해당기간동안 바우처를 사용하여 이용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카드(또는 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 438,000원
-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 438,000원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다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휴학 중인 자는 포함,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타: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 1~6급 아동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적용
 -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 적용
- 소득의 범위: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아니함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만 18~20세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기타: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1~6급 아동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월 20만 원), 차상위계층(월 15만 원), 보장시설(월 7만 원) 지원
- 경증장애인 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월 10만 원), 차상위계층(월 10만 원), 보장시설(월 2만 원)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③ 장애아동수당 지급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의거한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의 입양아동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 지원(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지원내용

- 월 15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시·군·구청 방문
-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
-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③ 서비스 지원(대상자)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콜센터 www.129.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의거한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지원내용

- 중증장애 입양아동: 월 627,000원
- 경증장애 입양아동: 월 551,000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시·군·구청 방문신청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③ 서비스 실시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대상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

선정기준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18세까지 지원,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전액 지급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에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졸업 시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지원
-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내역(시행령 제7조 2항 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 1. 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 준용)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시·군·구청 방문신청
-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③ 서비스 실시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대상

- 위탁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만 0세~18세 아동, 만 18세 이상이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 포함)

지원내용

- 후유장애 보험금, 입원·통원 의료비,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납치·인질 사건 발생 시 위로금, 강력범죄 시 위로금, 상해로 인한 얼굴 성형, 일상생활 중 일어나는 배상책임지원, 정신과질환 진단금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② 사실조사 및 심사
- ③ 서비스 결정
- ④ 서비스 제공(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관련 사이트 | 가정위탁지원센터 www.fostercare.or.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중 국내입양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선정기준

-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심리정서 치료 필요아동
- 가정위탁기간 및 입양기간이 1개월 이상인 아동(입양아동의 경우 만 2세~18세)
- 추천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지원내용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비용 지원
- 심리검사비: 1회, 20만 원
- 심리정서치료비: 월 4회 이상, 월 20만 원 이내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② 사실조사 및 심사
- ③ 서비스 결정
- ④ 서비스 제공

|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www.fostercare.or.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다문화 보육료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지원내용

- 만 0세아: 418,000원
- 만 1세아: 368,000원
- 만 2세아: 304,000원
- 취학 유예 경우, 만 5세아 보육료 1회에 한하여 재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2세 미만 아동
-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10만 원) 지급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③ 서비스 지원

| 문의처 |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02-2100-6000
- 교육부 민원콜센터 02-6222-6060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관련 사이트 |

- 교육부 www.moe.go.kr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index.jsp](http://www.mogef.go.kr/index.jsp)
- 위드맘 withmom.mogef.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동(만 18세 미만)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구

선정기준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양육비(월 15만 원/인),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 원/인), 자립촉진수당(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월 10만 원) 지원
- 전계층 대상 일반 양육수당과 중복지원됨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③ 서비스 지원

| 문의처 |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02-2100-6000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관련 사이트 | 위드맘 withmom.mogef.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대상

- 정규 고등학교 과정(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포함)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고 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단,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는 제외)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3%~60%(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고등학교 교육비(학비)/실비지원: 입학료+수업료+교과서대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③ 서비스 지원

| 문의처 |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02-2100-6000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관련 사이트 |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index.jsp
- 위드맘 withmom.mogef.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및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6세 이상, 2010. 12. 31. 이전 출생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유·청소년(만 5~18세) 대상(2016년 신청기준은 98년생~2011. 12. 31생까지임)
 - 신청자가 없을 경우, 개별법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가능

선정기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의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계층 순으로 선정
- 스포츠강좌이용권: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순으로 선정(재수혜자에 대한 누적 지원기간 24개월 초과 제한)

지원내용

-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 카드발급: 문화예술관람 및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전용 이용권카드 발급, 개인별 카드는 1매당 5만 원 한도(제공연령: 6세 이상, 2016년 기준 2010. 12. 31 출생자)
- 미신고시설을 제외한 복지시설의 거주자도 발급

- 스포츠강좌이용권

- 최대 7만 원 한도(월 스포츠활동 강좌비 지급)
- 수강료가 7만 원 이상인 경우 차액 본인 부담
-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강좌이용권 중복수혜불가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문화예술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청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② 사실조사 및 심사

③ 서비스 신청

④ 서비스 제공

| 문의처 |

- 문화누리카드 콜센터 1544-3412

-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298~9

| 관련 사이트 |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누리카드 www.munhwanuricard.kr

- (스포츠강좌이용권) 국민체육진흥공단 www.svoucher.or.kr/index.do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2

서비스 지원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

다문화 방문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2 서비스 지원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대상

- 만 0세(임산부)~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선정기준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행 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 아동에 대해 정기적인 사정을 실시하여 대상자 재선정

지원내용

- 기본서비스: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
- 통합사례관리
- 필수 및 맞춤 서비스
- 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 필수서비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제공

- 드림스타트에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중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 요소를 선별
 - (아동) 건강검진(성장발달 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총 8종)
 -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총 2종)
 - (부모)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총 1종)
- 맞춤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 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 기본 및 필수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 기타서비스
- 후원개발: 물품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시·군·구청 방문, 전화, 인터넷 등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② 욕구 조사 및 확정 ③ 서비스 지원

| 문의처 |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02-6901-0290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드림스타트 사업단 www.dreamstart.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다문화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만 24세 미만)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임신·신생아기: 임신확인시점~12개월
 - 유아기: 12개월~48개월
 - 아동기: 48개월~만 12세
-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 만 3세~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및 조손가족(단, 가족통합센터만 해당)

선정기준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 중도입국자녀: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재혼가정 자녀

지원내용

- 방문교육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 부모, 자녀생활 교육서비스 제공
 - 한국어교육서비스: 방문지도사와 1:1 한국어교육
 - 부모교육서비스: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
 -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자녀생활서비스: 주민센터 방문
- 방문한국어, 부모교육서비스: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 문의처 |

-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752

| 관련 사이트 |

- 다누리 포털 www.liveinkorea.kr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www.kihf.or.kr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기준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내용

-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 비용 부담 없음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② 사실조사 및 심사
- ③ 서비스 결정
- ③ 서비스 제공

| 문의처 |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 관련 사이트 | 다누리 포털 www.liveinkorea.kr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3

돌보시간 지원

모성보호육아(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돌봄시간지원



모성보호육아(출산 전 · 후 휴가)

지원대상

- 출산 전 · 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정규/비정규직 무관, 근속기간 무관)

지원내용

- 출산 전 · 후 휴가에 대한 급여 지급

지원기준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단태아
 - 출산 전 · 후 90일 사용 가능(단, 출산 후 45일 이상 배정)
 -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에 대해 사업주가 급여 지급. 이후 30일에 대해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원
 - ‘우선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월 135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지원 (단, 대규모기업은 30일 최대 1,350,00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4,050,000원 지원. 또한 근로자 임금이 월 135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추가 지급)
- 다태아
 - 출산 전 · 후 120일 사용 가능(단, 출산 후 60일 이상 배정)
 - ‘대규모기업’은 최초 75일에 대해 사업주가 급여 지급. 이후 45일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센터)지원.

-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소기업)’인 경우, 120일 모두 월 135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대규모기업은 45일 최대 2,055,00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5,400,000원 지원. 또한 근로자 임금이 월 135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추가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고용센터 방문, 인터넷, 우편접수

-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② 사실조사 및 심사
- ③ 서비스 결정
- ④ 서비스 제공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www.moel.go.kr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 휴가는 3~5일 사용 가능(사업주는 최소 3일 이상 배우자 출산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3일 이상 부여해야 함. 단, 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 유급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www.moel.go.kr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지원내용

- 통상임금의 40% 지급(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
-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
- 실수령액이 월 50만 원 미만인 경우 50만 원 지급

지원기준

-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엄마가 육아휴직 사용한 후, 동일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아빠의 첫 1개월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을 지원(단, 엄마와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 기준 적용)
- 육아휴직기간 중 퇴사 및 이직한 경우: 그 전일까지만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육아휴직 개시에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 구비서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모성보호에서 내려받음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www.moel.go.kr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서 육아휴직기간과 합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

지원내용

-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근무(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의 두 제도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사용 가능)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통상임금의 6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60%: 150만 원 상한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www.moel.go.kr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4

기타

입소대기 신청

유아교육 진흥원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Child Care Support Policy



4 기타



입소대기 신청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만 0~5세 영유아의 보호자(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입소 순위 배점

- 1순위 항목당 100점(부모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산정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순위별 대상자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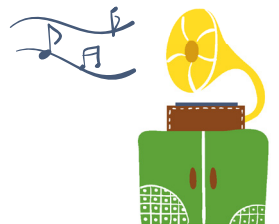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인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 (1순위 한부모 대상자 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지원내용

-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신청 가능(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
-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재원중인 아동 2개소, 미 재원중인 아동 3개소
- 입소대기 등록 시점: 연중 수시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온라인 신청)**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신청(단,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이용 iseoul.seoul.go.kr)
 - ① 아동등록: 어린이집 입소 자녀 등록
 - ② 어린이집 검색: 어린이집 검색, 신청할 어린이집 선택
 - ③ 예약신청: 입소대기 신청
 - ④ 입소대상자 확정: 어린이집에서 입소우선순위에 따른 대기순서를 확인하여 입소 대상자를 확정
 - ⑤ 입소우선순위자료제출: 어린이집 원장은 자동연계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입소관련 서류일체를 받아 반드시 확인
 - ⑥ 아동입소처리: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대기 순서에 따라 아동을 입소처리
- **(어린이집 방문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

| 관련 사이트 |

-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iseoul.seoul.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유아교육 진흥원 운영

유아 체험교육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만 3~5세 유아 및 학부모

상세내용

- 유아 발달에 적합한 체험교육을 통해 인성 및 창의성 신장 다양한 체험교육기회 제공으로 유아의 조화로운 심신 발달(각 지역별 프로그램 상이)

만 3~5세 유아 및 학부모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만 3~5세 유아 및 학부모

상세내용

- 유아문제행동, 자녀 양육 관련 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각 지역별 상이)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문의처 | 해당지역 유아교육진흥원으로 문의 및 신청

| 관련부처 | 교육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맞춤형부모교육

지원대상

- 관내의 영유아가 있는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 및 자녀

지원내용

- 클로버 부모교육: 건강한 양육문화 조성 및 역할 인식 제고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
 - 부모대상 1회기/2회기(소중한 나, 멋진 아이, 긍정의 가족, 아름다운 이웃)
 - 부모/자녀대상(체험) 영아편 6회기/유아편 10회기(긍정의 가족, 아름다운 이웃)
- 자녀권리존중 부모교육: 자녀의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과 부모로서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부모교육

맞춤형 양육서비스

지원대상

- 영유아 및 영유아 가족

지원내용

- 장난감·도서대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다양한 놀잇감 및 활동 공간, 놀이체험 프로그램 제공, 장난감·도서·육아용품 대여지원, 영유아 놀이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부모-자녀의 긍정적 놀이 활동 지원을 위한 상담

- 자녀양육콘텐츠 개발: 가정에서 자녀의 놀이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부모 스스로 적합한 놀이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의 가정방문을 통하여 놀이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자녀 양육상담(온라인상담) 및 아이사랑플래너 상담(영유아 문제행동, 가정 내 문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대면상담)

신청방법 및 문의처

- | **절차 및 방법** | 해당하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및 신청
- | **문의처** | 해당지역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
- | **관련 사이트** | 중앙육아지원종합센터 central.childcare.go.kr
-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대상

- 취학 전·후의 아동 및 부모

지원내용

-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돌봄 활동 장소 제공
- 장난감 및 도서 이용 및 대여
- 부모들 간 자녀양육 경험 및 정보 교류 기회 제공
- 주민들은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에 참여 가능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

- 일반국민

지원내용

- 가족 돌봄 나눔
 - 모두 가족 봉사단: 기존의 가족봉사단의 활동내용을 '돌봄'주제로 전환하여 운영
 - 모두 가족 품앗이: 전업주부와 맞벌이 주부가 함께 운영하는 품앗이, 남성이 참여하는 품앗이 등 다양한 그룹 운영
 -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토요 프로그램: 요일 2시간, 연간 24시간 이상
-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조)부모교육

- 예비/신혼기 부부,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포함한 생애주기별 (조)부모교육
- 남성대상 교육: 아버지 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남성대상 자기돌봄 교육 등
- 가족상담
- 가족문화: 가족사랑의 날(월 1회 수요일, 연간 20시간 이상), 가족여가프로그램, 지역 참여 및 나눔 행사 등
- 다양한 가족 통합 서비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지원, 관계향상교육, 놀토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협의체 참여, 협약 및 연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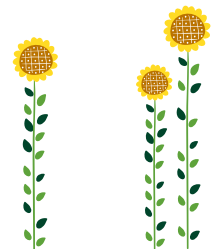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각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접 신청 접수

| **문의처** |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 **관련 사이트** | 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영유아 연령별

출산 전·후 | 신생아 | 3개월
6개월 | 만 3세 | 만 6세 | 기타



1. 출산 전 · 후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지원대상

- 전국가구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

선정기준

- 출산가정의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소득기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 출산(예정)여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
 - * 사산 및 유산 포함(단,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고, 의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산모 사망 시,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이 될 수 있는 2촌 이내 직계가족(산모의 배우자 등)이 신청한 경우도 지원
 -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가정방문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원기준

- 단태아: 10일
- 쌍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 20일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경과 후 바우처 자격 소멸)

| 절차 및 방법 |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신청, 인터넷 www.online.bokjiro.go.kr
 - ① 서비스 신청
 - ② 보건소에서 조사
 - ③ 도·시·군·구에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사회서비스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모성보호육아(출산 전·후 휴가)

지원대상

-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정규/비정규직 무관, 근속기간 무관)

지원내용

-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한 급여 지급

지원기준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단태아
 - 출산 전·후 90일 사용 가능(단, 출산 후 45일 이상 배정)
 -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에 대해 사업주가 급여 지급. 이후 30일에 대해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센터)지원
 - ‘우선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월 135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지원(단, 대규모기업은 30일 최대 1,350,00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4,050,000원 지원. 또한 근로자 임금이 월 135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추가 지급)
- 다태아
 - 출산 전·후 120일 사용 가능(단, 출산 후 60일 이상 배정)
 - ‘대규모기업’은 최초 75일에 대해 사업주가 급여 지급. 이후 45일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센터)지원
 - ‘우선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인 경우, 120일 모두 월 135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대규모기업은 45일 최대 2,055,00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5,400,000원 지원. 또한 근로자 임금이 월 135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추가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고용센터 방문, 인터넷, 우편접수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② 사실조사 및 심사

③ 서비스 결정

④ 서비스 제공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www.moel.go.kr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2. 신생아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 기준 0~84개월 미만)을 돌보는 경우
- 농어촌 양육수당: 취학 전 84개월 미만 아동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가정 양육 아동

지원내용

-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급
 - 24개월 미만: 150,000원 지급
 - 24개월 이상~84개월 미만: 100,000원 지급
-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 양육수당
 - 36개월 미만: 200,000원 지급
 - 36개월 이상~만 5세(최대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급
- 농어촌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급
 -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77,000원 지급
 -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156,000원 지급
 - 36개월 이상~48개월 미만: 129,000원 지급
 - 48개월 이상~84개월 미만: 100,000원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만 0~2세 보육료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아
- 유아학비, 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제외

지원내용

- 만 0세아: 418,000원
- 만 1세아: 368,000원
- 만 2세아: 304,000원

지원기준

- 무상보육 기간은 3년 초과 불가함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문의처 |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

- 만 0~2세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 전)를 지원하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법정저소득층 취학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 야간보육료: 주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 24시간 보육료: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은 물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지원하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시간 연장형 보육

- 매월 지원 한도액: 60시간, 시간 연장보육 이용시간을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월 단위 합산 후, 잔여분이 30분 이상일 경우 1시간으로 계산, 30분 미만 절사)
- 보육시간: 기준시간 초과한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지원단가(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일반아동 시간당 3,000원 지원(지원한도액: 180,000원, 지원율: 기준액×100%)/장애아동: 시간당 4,000원 지원(지원 한도액: 240,000원, 지원율: 기준액×100%)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출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 보육

- 주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

- 보육시간: 19:30~익일 07:30
- 지원단가: 만 0세 418,000원/만 1세 368,000원/만 2세 304,000원/만 3세 이상 220,000원

– 24시간 보육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
- 보육시간: 07:30~익일 07:30,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 07:30) 동시 이용
- 지원단가: 0세 627,000원/만 1세 552,000원/만 2세 456,000원/만 3세 이상 330,000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

-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해당 어린이집 통해 신청

| 문의처 |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 아이사랑보육포털 1661-9361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지원내용

- 보건소 및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거주지 무관)
- 2016년 지원대상 백신(16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생백신, 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A형간염, HPV(자궁경부암, 2016년 6월 예정)
- 2016년 미지원대상 백신: 결핵 경피용, 로타바이러스 등

추가 지원내용

- 예방접종기록 전산화를 통한 효율적 보관 및 관리
- 예방접종증명서 인터넷 발급(민원24 홈페이지에서 무료발급)
- 예방접종 확인 및 다음 접종 사전알림서비스(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함)
- 예방접종 안전관리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위탁 의료기관 방문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예방접종도우미 nip.cdc.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

지원내용

- 총 7차의 영유아건강검진(일반/구강검진)
- 검진 항목: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과 9종의 건강교육
- 일반 건강검진주기: 4~6개월/9~12개월/18~24개월/30~36개월/42~48개월/54~60개월/66~71개월
- 구강 건강검진주기: 18~29개월/생후 42~53개월/생후 54~65개월

검사비용: 본인부담 없음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① 건강검진 실시 방법/절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② 건강검진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 ③ 결과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과를 통보

| 문의처 |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 관련 사이트 |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0~12개월 영아

선정기준

- 기저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만 1세 미만인 영아를 둔 가구에 영아별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특정질병(치료) 혹은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 특정질병(치료):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HIV' 등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구 0~12개월 영아 1인당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기저귀 구매비용 월 64,000원 정액 지원
 - 조제분유: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월 86,000원 정액 지원
 - 기저귀+조제분유: 월 150,000원 정액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①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서류 제출
- ② 자격결정통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결과통보
- ③ 해당 시, 바우처 지급
- ④ 해당기간동안 바우처를 사용하여 이용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지원내용

- 통상임금의 40% 지급(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
-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
- 실수령액이 월 50만 원 미만인 경우 50만 원 지급

지원기준

-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엄마가 육아휴직 사용한 후, 동일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아빠의 첫 1개월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을 지원(단, 엄마와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 기준 적용)
- 육아휴직기간 중 퇴사 및 이직한 경우: 그 전일까지만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 구비서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모성보호에서 내려받음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www.moel.go.kr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서 육아휴직기간과 합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

지원내용

-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근무(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의 두 제도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사용 가능)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통상임금의 6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60%: 150만 원 상한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www.moel.go.kr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자 관리 지원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검사(생후 48시간~7일 이내):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6종에 한해 신생아 전원에게 무료지원
 - 선천성대사 이상질환: 페닐케톤뇨증 환자,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 호모시스틴뇨증 환자, 단풍당뇨증 환자, 갈락토스혈증 환자, 기타 선천성 대사이상증 환자를 포함
- 환자관리대상자: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 이상질환으로 진단된 자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환자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용(20,000원/1인)
 - 검사항목: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6종
- 2차 정밀검사비용 지원: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자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 중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1인당 5만 원 범위 내 지원
-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제외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환 치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약제비 포함)의 경우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함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보건소에 신청
- 2차 정밀검사 경우:
 - ① 증빙서류(의료기관의 검사결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 청구
 - ② 시·군·구청장은 환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확인 후,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항목 제외)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아가사랑 www.agasarang.org
- G-Health www.g-health.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 미숙아: 출생시 2.5kg 미만이거나, 2.5kg 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신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일반신생아실 입원 미숙아는 제외)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 받은 환아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선정기준

-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 다자녀(3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중에서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기준

- 미숙아
 - ① 본인부담금 100만 원 미만: 전액(100%)
 - ② 100만 원 초과: 본인부담금 중 100만 원 제외 금액의 80% 적용 지원
 - ③ 500만 원 초과 시 500만 원까지는 ①, ② 기준을 적용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90%를 적용 지원
 - 체중별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을 차등 적용
- 금액별 차등지원 기준
 - ① 지원 의료비가 1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 ② 지원 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③ 본인부담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은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500만 원까지는 ①, ② 기준을 적용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최고지원금액까지만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①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록
- ② 입원 및 수술 등 의료비 발생 시 지원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제출서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처 |

-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G-Health www.g-health.kr
- 아가사랑 www.agasarang.org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보장 가구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 이하 가구의 신생아
-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소득수준 관계없음)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 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지원
- 가족 수 산정 방법
 - 난청조기진단 지원 대상 태아 포함
 - 주민등록 및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
 -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포함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에는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 수 모두 합산
 -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제외
- 보험료 산정 방법
 - 의료비 신청시점 기준(최근 월의 납부 확인서)
 -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될 경우, 정상 월분으로 평가(직장가입자의 경우 4월분에 연간 정산 보험료가 추가되어 고지되는 경우 있음)
 - 가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고, 6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에 등재된 경우에는 보험료 합산(맞벌이 등으로 양쪽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양쪽 보험료 합산(직장 가입자), 보험료 합산 및 등재 인원 모두 가족 수 합산(지역가입자)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외국 유학 등으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 자격회복 후 신청
- 수급증 확인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신생아청각선별검사 1인당 검사비 지원:
 - 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AOAE) 10,000원
 -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 27,000원
 - AOAE와 AABR 동시 실시한 경우 AABR 검사비 27,000원
-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ABR)의 법정 본인부담금 지원(전문 협력의료기관 검사비)
 - 확진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선별검사인 AABR 또는 AOAE검사 지원 불가
 - 만 6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적용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여러 번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지원대상 가정에 쿠폰 지급
- 청각선별검사비 지급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함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생후 1개월 이내
- 난청확진검사: 청각선별 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생후 3개월 이내

| 절차 및 방법 |

- ① 지원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 ② 쿠폰발급: 보건소에서 발급
- ③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검사기관에서 선별검사와 확진 검사
- ④ 검사비 청구: 검사기관이 보건복지부 사업지원팀에 검사비 청구
- ⑤ 검사기관 청구내역 통보: 보건복지부 사업지원팀이 보건소로 청구내역 통보
- ⑥ 검사비 지급: 보건소에서 검사비 지급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아가사랑 www.agasarang.org
- G-Health www.g-health.kr
- 국가건강정보포털 health.mw.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대상

- 취학 전 · 후의 아동 및 부모

지원내용

-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돌봄 활동 장소 제공
- 장난감 및 도서 이용 및 대여
- 부모들 간 자녀양육 경험 및 정보 교류 기회 제공
- 주민들은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에 참여 가능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문의처 | '건강지원센터'를 통한 '공동육아나눔터' 1577-9337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대상

- 위탁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만 0세~18세 아동, 만 18세 이상이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 포함)

지원내용

- 후유장애 보험금, 입원·통원 의료비,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납치·인질 사건 발생 시 위로금, 강력범죄 시 위로금, 상해로 인한 얼굴 성형, 일상생활 중 일어나는 배상책임지원, 정신과질환 진단금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② 사실조사 및 심사
- ③ 서비스 결정
- ④ 서비스 제공(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관련 사이트 | 가정위탁지원센터 www.fostercare.or.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다문화 보육료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지원내용

- 만 0세아: 418,000원
- 만 1세아: 368,000원
- 만 2세아: 304,000원
- 만 3~5세아: 220,000원
- 취학 유예 경우, 만 5세아 보육료 1회에 한하여 재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2세 미만 아동
-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10만 원) 지급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③ 서비스 지원

| 문의처 |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02-2100-6000
- 교육부 민원콜센터 02-6222-6060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관련 사이트 |

- 교육부 www.moe.go.kr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index.jsp
- 위드맘 withmom.mogef.go.kr/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교육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동(만 18세 미만)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구

선정기준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양육비(월 15만 원/인),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 원/인), 자립촉진수당(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월 10만 원) 지원
- 전제층 대상 일반 양육수당과 중복지원됨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③ 서비스 지원

| 문의처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관련 사이트 | 위드맘 withmom.mogef.go.kr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대상

- 만 0세(임산부)~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선정기준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행 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 아동에 대해 정기적인 사정을 실시하여 대상자 재선정

지원내용

- 기본서비스: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
- 통합사례관리
- 필수 및 맞춤 서비스
- 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 필수서비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제공

- 드림스타트에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중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 요소를 선별
 - (아동) 건강검진(성장발달 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총 8종)
 -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총 2종)
 - (부모)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총 1종)
- 맞춤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 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 기본 및 필수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 기타서비스
- 후원개발: 물품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시·군·구청 방문, 전화, 인터넷 등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② 욕구 조사 및 확정 ③ 서비스 지원

| 문의처 |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02-6901-0290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드림스타트 사업단 www.dreamstart.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입소대기 신청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만 0~5세 영유아의 보호자(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입소 순위 배점

- 1순위 항목당 100점(부모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산정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순위별 대상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위소득의 52%)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인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2순위

- (1순위 한부모 대상자 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온라인 신청)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신청(단,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이용 iseoul.seoul.go.kr)

- ① 아동등록: 어린이집 입소 자녀 등록
- ② 어린이집 검색: 어린이집 검색, 신청할 어린이집 선택
- ③ 예약신청: 입소대기 신청
- ④ 입소대상자 확정: 어린이집에서 입소우선순위에 따른 대기순서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확정
- ⑤ 입소우선순위자료제출: 어린이집 원장은 자동연계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입소관련 서류일체를 받아 반드시 확인
- ⑥ 아동입소처리: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대기 순서에 따라 아동을 입소처리

- (어린이집방문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

| 관련 사이트 |

-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iseoul.seoul.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3. 3개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소득활동, 다자녀양육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정부지원 및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 취업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
- 아동의 부모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3명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이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한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비장애아 돌봄
- 그 외 양육에 부담이 있는 가정
 - 부모 또는 모가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중일 때
 - 부모 또는 모가 재학 중이거나 입증 가능한 취업 학원을 수강할 때

선정기준

- 아동의 연령 기준과 가구 소득 기준 고려 차등 지원
- 자녀양육 정부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서비스 이용시간 및 아동 수에 따라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 금액 다름
-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 가능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시간제한 없이 전액 부모 부담(시간당 6,500원)

지원형태

- 시간제
- 종일제
- ※ 상세내용은 20~21쪽 참조

4. 6개월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 사업

지원대상

- 종일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

지원내용

- 기본형(월 40시간): 시간제보육료 이용단가 4,000원 중 2,000원
- 맞벌이형(월 80시간): 시간제보육료 이용단가 4,000원 중 3,000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전화, 인터넷(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 **문의처** | 시간제보육 상담 1661-9361

| **관련 사이트**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5. 만 3세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대상

-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아
- 취학대상 아동(2009년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하여 유예한 1년에 한해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을 신청일 기준으로 220,000원 지원

지원기준

-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안되며, 부모의 서비스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무상교육 기간은 3년 초과 불가함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포털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직접 신청

| 문의처 |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233
- 에듀콜센터 1544-0079

| 관련 사이트 |

- 교육부 www.moe.go.kr
- e-유치원 childschooll.moe.go.kr
- 복지포털 www.bokjiro.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교육부

취학 전 아동실명예방

지원대상

- 가정시력검사(시력검진사업): 자기표현이 가능한 만 3세~6세
- 수술비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 가정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 가정(직장가입자일 경우 차량 소유가액이 3천만 원 미만인자)

지원내용

- 가정시력검사(시력검진사업)
 - 가정용 시력검사도구 배부: 한국실명예방재단 → 전국보건소 → 유치원/어린이집 → 가정(시력검사 실시) → 어린이집에서 취합 2차 검사 대상자 선별 → 보건소에 통보
 - 2차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이후, 절차에 따라 재검진, 정밀검사 등이 실시됨
- 안질환(약시), 저시력 어린이 관리 사업
- 약시 치료중인 어린이 교육자료 및 가림치료용 패치배부
 - 약시 어린이 치료 순응율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 배부
 - 상담 및 약시 어린이 가림치료용 패치 무료지원(1년 중 6개월)
- 저시력 어린이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기구 대여
- 수술비지원사업: 안과 사전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 및 수술전·후 치료목적의 안경(연 2회, 특수처방안경 10만 원, 일반처방안경 5만 원 한도)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 ①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지원결정 전 수술비 지원 불가)
 - ② 실사 및 심사 ③ 서비스 결정
 - ④ 서비스 제공
- 가정시력검사: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개인이 신청 또는 복지부를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급

| 문의처 |

-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088, 1102

| 관련 사이트 |

- 한국실명예방재단 www.kfpb.org

| 관련부처 |

- 보건복지부

유아교육 진흥원 운영

유아 체험교육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만 3~5세 유아 및 학부모

상세내용

- 유아 발달에 적합한 체험교육을 통해 인성 및 창의성 신장 다양한 체험교육기회 제공으로 유아의 조화로운 심신 발달(각 지역별 프로그램 상이)

만 3~5세 유아 및 학부모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만 3~5세 유아 및 학부모

상세내용

- 유아문제행동, 자녀 양육 관련 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각 지역별 상이)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문의처 | 해당지역 유아교육진흥원으로 문의 및 신청

| 관련부처 | 교육부

6. 만 6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및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6세 이상, 2010. 12. 31. 이전 출생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유·청소년(만 5~18세) 대상(2016년 신청기준은 98년생~2011. 12. 31생까지임)
 - 신청자가 없을 경우, 개별법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가능

선정기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의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계층 순으로 선정
- 스포츠강좌이용권: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 순으로 선정 (재수혜자에 대한 누적 지원기간 24개월 초과 제한)

지원내용

-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 카드발급: 문화예술관람 및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전용 이용권카드 발급, 개인별 카드는 1매당 5만 원 한도(제공연령: 6세 이상, 2016년 기준 2010. 12. 31 출생자)
 - 미신고시설을 제외한 복지시설의 거주자도 발급

- 스포츠강좌이용권

- 매월, 최대 7만 원 한도, 스포츠활동 강좌비 지급
- 수강료가 7만 원 이상인 경우 차액 본인 부담
-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강좌이용권, 중복수혜 불가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문화예술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청
-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② 사실조사 및 심사
- ③ 서비스 신청
- ④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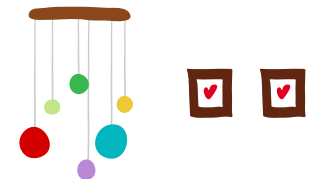
| 문의처 |

- 문화누리카드 콜센터 1544-3412
-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298-9

| 관련 사이트 |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누리카드 www.munhwanuricard.kr
- (스포츠강좌이용권) 국민체육진흥공단 www.svoucher.or.kr/index.do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7. 기타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 휴가는 3~5일 사용 가능. (사업주는 최소 3일 이상 배우자 출산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3일 이상 부여해야 함. 단, 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 유급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www.moel.go.kr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질병감염 아동 특별지원

지원대상

- 법정 전염성 질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

지원내용

-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돌봄 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 시간당 7,800원으로 질병 완치 시까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50% 정부 지원
- 정부지원시간 차감 없음

지원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 또는 이용자 가정의 신청으로 우선 서비스 제공
- 추후 진단서(소견서) 및 처방전, 시설 이용 확인서(재학증명서 포함)를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정부지원 가구
- ① 정부지원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 부모 및 양육권자 직접 신청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② 소득조사(읍·면·동)
- 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
- ④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제공

- 아이돌봄 홈페이지 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또는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
- 본인부담금 선(先)입금 후 이용가능(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 맞벌이 부부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 직장보험 가입자이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

⑤ 사후관리(시·군·구, 서비스기관)

- 정부미지원(본인부담) 가구: 아이돌봄 홈페이지 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센터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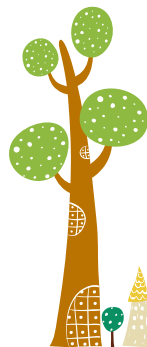
| 문의처 |

- 아이돌봄 상담 대표전화 1577-2514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02-2100-6000

| 관련 사이트 |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index.jsp
- 아이돌봄 지원사업 idolbom.go.kr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언어발달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의 서비스를 제공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수급자: 22만 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0만 원(본인부담금 2만 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18만 원(본인부담금 4만 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16만 원(본인부담금 6만 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 | |
|---------------|------------------|----------|
| ① 지원신청 | ② 소득재산 확인 | |
| ③ 대상자 결정 및 통지 | ④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송부 | ⑤ 서비스 제공 |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다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휴학 중인 자는 포함,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타: 등록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 1~6급 아동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적용
 -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 적용
- 소득의 범위: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비는 적용 없음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만 18~20세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기타: 등록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 1~6급 아동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월 20만 원), 차상위계층(월 15만 원), 보장시설(월 7만 원) 지원
- 경증장애인 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월 10만 원), 차상위계층(월 10만 원), 보장시설(월 2만 원)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③ 장애아동수당 지급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의 입양아동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지원내용

- 월 15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시·군·구청 방문

-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
-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③ 서비스 지원(대상자)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콜센터 www.129.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의거한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지원내용

- 중증장애 입양아동: 월 627,000원
- 경증장애 입양아동: 월 551,000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시·군·구청 방문신청

-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③ 서비스 실시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대상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

선정기준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18세까지 지원,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전액 지급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에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졸업 시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지원
-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내역(시행령 제7조 2항 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 준용)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시·군·구청 방문신청
-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③ 서비스 실시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중 국내입양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선정기준

-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심리정서 치료 필요아동
- 가정위탁기간 및 입양기간이 1개월 이상인 아동(입양아동의 경우 만 2세~18세)
- 추천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한 아동

지원내용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비용 지원
- 심리검사비: 1회, 20만 원
- 심리정서치료비: 월 4회 이상, 월 20만 원 이내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절차 및 방법 |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방문

-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② 사실조사 및 심사
- ③ 서비스 결정 ④ 서비스 제공

|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관련 사이트 | 가정위탁지원센터 www.fostercare.or.k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대상

- 정규 고등학교 과정(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포함)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고 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단,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는 제외)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3~60%(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고등학교 교육비(학비)/실비지원: 입학료+수업료+교과서대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③ 서비스 지원

| 문의처 |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02-2100-6000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관련 사이트 |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index.jsp

- 위드맘 withmom.mogef.go.kr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만 24세 미만)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임신·신생아기: 임신확인시점~12개월
 - 유아기: 12개월~48개월
 - 아동기: 48개월~만 12세
-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 만 3세~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및 조손가족(단, 가족통합센터만 해당)

선정기준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 중도입국자녀: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재혼가정 자녀

지원내용

- 방문교육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 부모, 자녀생활 교육서비스 제공
 - 한국어교육서비스: 방문지도사와 1:1 한국어교육
 - 부모교육서비스: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
 -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자녀생활서비스: 주민센터 방문
- 방문한국어, 부모교육서비스: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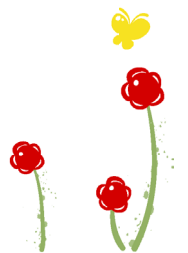
| 문의처 |

-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752

| 관련 사이트 |

- 다누리 포털 www.liveinkorea.kr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www.kihf.or.kr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기준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내용

-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 비용 부담 없음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절차 및 방법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② 사실조사 및 심사
- ③ 서비스 결정
- ④ 서비스 제공

| 문의처 |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 관련 사이트 | 다누리 포털 www.liveinkorea.kr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맞춤형부모교육

지원대상

- 관내의 영유아가 있는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 및 자녀

지원내용

- 클로버 부모교육: 건강한 양육문화 조성 및 역할 인식 제고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
 - 부모대상 1회기/2회기(소중한 나, 멋진 아이, 긍정의 가족, 아름다운 이웃)
 - 부모/자녀대상(체협) 영아편 6회기/유아편 10회기(긍정의 가족, 아름다운 이웃)
- 자녀권리존중 부모교육: 자녀의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과 부모로서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부모교육

맞춤형 양육서비스

지원대상

- 영유아 및 영유아 가족

지원내용

- 장난감·도서대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다양한 놀잇감 및 활동 공간, 놀이체험 프로그램 제공, 장난감·도서·육아용품 대여지원, 영유아 놀이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부모-자녀의 긍정적 놀이 활동 지원을 위한 상담

- 자녀양육콘텐츠 개발: 가정에서 자녀의 놀이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부모 스스로 적합한 놀이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의 가정방문을 통하여 놀이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자녀 양육상담(온라인상담) 및 아이사랑플래너 상담(영유아 문제행동, 가정 내 문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대면상담)

신청방법 및 문의처

- | **절차 및 방법** | 해당하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및 신청
- | **문의처** | 해당지역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
- | **관련 사이트** | 중앙육아지원종합센터 central.childcare.go.kr
-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대상

- 일반국민

지원내용

- 가족 돌봄 나눔
 - 모두 가족 봉사단: 기존의 가족봉사단의 활동내용을 '돌봄'주제로 전환하여 운영
 - 모두 가족 품앗이: 전업주부와 맞벌이 주부가 함께 운영하는 품앗이, 남성이 참여하는 품앗이 등 다양한 그룹 운영
 -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토요 프로그램: 요일 2시간, 연간 24시간 이상
-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조)부모교육
 - 예비/신혼기 부부,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포함한 생애주기별 (조)부모교육
 - 남성대상 교육: 아버지 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남성대상 자기돌봄 교육 등
- 가족상담
- 가족문화: 가족사랑의 날(월 1회 수요일, 연간 20시간 이상), 가족여가프로그램, 지역 참여 및 나눔 행사 등
- 다양한 가족 통합 서비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지원, 관계향상교육, 놀토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협의체 참여, 협약 및 연계사업

신청방법 및 문의처

- | **절차 및 방법** | 각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접 신청 접수
- | **문의처** |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 | **관련 사이트** | 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부록

정책정보제공 웹사이트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웹사이트
전국 유아교육진흥원 웹사이트
전국 장난감 대여 기관 주소



부록



정책정보제공 웹사이트

- 아이사랑사이트 <http://www.childcare.go.kr>
- 공공보건포털 <http://www.g-health.kr>
- 아이돌봄 <https://idolbom.go.kr>
-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 '일가정특목' 모바일 앱 <http://nstore.naver.com/appstore/web/detail.nhn?productNo=1507158&sr=ps>(구글플레이스토어, 네이버, 애플 앱스토어, 티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웹사이트(91개)

센터명	홈페이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childcare.go.kr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seoul.childcare.go.kr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busan.childcare.go.kr
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daegu.childcare.go.kr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incheon.childcare.go.kr
광주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gwangju.childcare.go.kr
대전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daejeon.childcare.go.kr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ulsan.childcare.go.kr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sejong.childcare.go.kr
시도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gyeonggi.childcare.go.kr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gyeongginorth.childcare.go.kr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gangwon.childcare.go.kr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chungbuk.childcare.go.kr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chungnam.childcare.go.kr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jeonbuk.childcare.go.kr
전라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jeonnam.childcare.go.kr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gyeongbuk.childcare.go.kr
경상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gyeongnam.childcare.go.kr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jeju.childcare.go.kr

센터명		홈페이지
시군구	서울특별시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www.gncare.go.kr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www.gdkids.or.kr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www.gskids.or.kr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childcare.gangbuk.go.kr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www.gwanak.go.kr/educare/main.html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www.gjcare.go.kr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guroccic.guro.go.kr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www.happycare.or.kr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www.nwsc.or.kr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doccic.go.kr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www.ddmccic.or.kr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www.dccic.go.kr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www.mccic.or.kr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www.sdmccic.or.kr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youngua.seocho.go.kr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ccic.sd.go.kr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ijoa.gongdan.go.kr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cafe.naver.com/speducare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www.ychccic.or.kr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www.ydpccic.or.kr
		용산구육아종합지원센터 www.ysccic.or.kr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www.epmjuccic.co.kr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www.jnccic.or.kr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www.jccic.or.kr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www.jgkids.or.kr
	부산광역시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 gijangchild.or.kr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sasangicare.kr
		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bjscfc.or.kr
	대구광역시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2016. 3. 개소 예정

센터명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	www.gyboyuk.go.kr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www.nccic.or.kr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www.jbpeducare.or.kr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isscc.or.kr	
	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	www.ys-scc.com	
울산광역시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www.namgui.or.kr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www.jgicare.or.kr	
시군구	경기도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educaregc.or.kr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echild.or.kr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gmscc.or.kr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6. 4. 개소 예정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guricenter.or.kr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gpscc.or.kr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gpchildcare.or.kr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nyjscc.kr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bucheoni.or.kr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sneducare.or.kr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swchildcare.or.kr/child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shccic.net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ansanbo6.com	
	안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aycteducare.go.kr	
	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vision.yangju.go.kr	
	(수원)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	ytchildcare.or.kr/child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osanchild.or.kr	
	용인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yicare.or.kr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uweducare.or.kr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icare.or.kr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goodcare.or.kr	
	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pajuchildcare.or.kr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ptchildcare.or.kr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hsicare.or.kr	
	강원도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kneducare.or.kr

센터명		홈페이지
시군구	충청남도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ceic.or.kr
	충청북도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cjkids.or.kr
	경상북도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mgcare.or.kr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phcare.or.kr
	경상남도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jinju.go.kr/care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changwoncare.or.kr
		합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hc4children.or.kr
	전라북도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 childcare.gochang.go.kr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hwgunsan.or.kr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childcare.iksan.go.kr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jeonjuscc.or.kr		

유아교육진흥원 및 유아체험교육원 웹사이트(17개)

센터명	홈페이지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www.seoul-i.go.kr
경기유아체험교육원	www.kench.or.kr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www.iecedi.or.kr
대전유아교육진흥원	www.dje-i.go.kr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www.daegu-i.go.kr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www.uskids.kr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iedu.gen.go.kr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child.pen.go.kr
강원유아교육진흥원	www.gwch.go.kr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www.cn-i.go.kr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www.cbiedu.go.kr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www.jb-i.kr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iedu.da.jne.kr
경상남도유아교육원	www.gnchild.go.kr
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	www.gnphei.go.kr
김해유아체험교육원	www.ghkidsee.or.kr
제주유아교육진흥원	www.jjkids.go.kr

전국 장난감 대여 기관 주소

지역명	센터명	주소	연락처
서울	녹색장난감도서관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을지로입구역 내 녹색장난감도서관	02-753-0222~3
부산	그린나래 장난감도서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262	051-866-0536~8
대구	푸른나무도서관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371길 30	053-421-2346~7
인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예술회관역점)	인천 1호선 예술회관역 지하상가 내 (지하상가와 롯데백화점 연결되는 무빙워크 앞)	032-422-7833~4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경인교대입구역점)	인천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사내 지하2층	032-552-7833~4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동구청점)	인천 동구 염전로 40번길 70(송림동, 동구다목적회관 2층)	032-772-0252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부평구청역점)	인천 부평구 길주로 527(7호선 부평구청역사내 4번출구)	032-529-0252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부개점)	인천 부평구 수변로 175(부평구자원재활용센터 2층)	032-515-0252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박촌역점)	인천 계양구 장제로 988 인천지하철 박촌역사내 (2,3번 출구)	032-551-9252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동양도서관점)	인천 계양구 당미길 31(동양도서관 1층)	032-548-9252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송의점)	인천 남구 경인로 34번길 20(송의2동주민센터 2층)	032-888-0252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검단점)	인천 서구 원정로 18(한운메디컬센터 6층)	032-564-0252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남동구청 내 자동차등록 민원실 1층)	032-472-3789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웅진군 백령점)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71번길 20(백령종합사회 복지관 내)	032-836-6001~3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연수점)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연연구청 의화로 1층)	032-749-6766~7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강화군 누리아라점)	인천 강화군 강화읍 향나무길 22번길 12(강화군새마을 회관 2층)	032-934-4828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월디점)	인천 중구 율목로 54	032-766-0198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연희점)	인천 서구 송학로 264(연희청소년문화의집 1층)	032-568-7235
광주	누리봄 장난감도서관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70 2층(운암동)	062-714-3636 (내선:6)
대전	도리도리정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 270번지) 대전월드컵경기장 동관 1층	042-721-1256~7
경기도 북부	아이사랑 장난감나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2동 512-4번지 4층	031-876-1822 031-876-5767
강원	장난감대여 서비스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 47번길 35(후평1동 685-5번지)	033-244-2660
충북	노리마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충청북도종합사회 복지센터 202호	043-237-8774
전남	장난감 놀이세상 '아이꿈터'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여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 2층	070-8891-1427

지역명	센터명	주소	연락처
경북	장난감 도서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193-10	054-337-9939~40
제주	장난감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13 경인빌딩 3층(도남동)	064-746-2211
서울강남구	대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5길 11, 4층(대치2동 985-1)	02-546-1768~9
	논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17, 2층(논현2동 114-24)	02-546-1874~5
	삼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82길 23, 3층(삼성1동 149-11)	02-546-1783, 6
	개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3길 9, 3층(개포2동 189-3)	02-546-1752, 4
	도곡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8길 57, 1층(도곡동 892-6)	02-529-1742~3
서울강동구	동동레코백 (성내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6길 16(성내동 556-1) 강동어린이회관 1층	02-486-9277
	강동육아누리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168강동구민회관 2층(천호동)	02-487-3516
서울강북구	장난감나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66길 9(수유동 410-293) 2층	02-994-7480
서울강서구	키득키득 놀잇감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 2길 50(내발산동)	02-2064-2730
서울관악구	꿈놀이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128 2층(봉천동 1571-2)	02-871-2836
서울광진구	재미씨앗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56가길 31 3층(군자동)	02-871-2836
서울 금천구	장난감나라 (시흥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지하1층	02-894-2221
	장난감나라 (독산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23길 11 독산1동주민센터 4층	02-858-5755
서울노원구	놀리아띠 상계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859 공공복합청사 3, 4층	02-930-1944
	놀리아띠 월계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378 월계헬스케어센터 3층	02-935-1944
	놀리아띠 공릉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166-1 공릉보건지소 4층	02-949-1945
서울도봉구	장난감나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12길 28(방학3동 306-10)	02-3494-3557
	장난감나눔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4길 24-5 (창동 502-33번지)	02-994-3341~2
서울 동대문구	네티나무 장난감방 (답십리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62(답십리동)	02-2247-5843~5
	네티나무장난감 누리(제기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악령시로 7길 19(제기동)	02-923-2272~3
서울동작구	로아장난감대여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37 동작상도국주도서관 내 1층	02-823-4568
	창의놀이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11, 4층	02-823-4587
	사당영유아 돌보미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1동 1044-42번지 사당노인종합복지관 3층	02-583-4569~70
	신대방영유아 돌보미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1길 24	02-849-9760
서울마포구	망원장난감대여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 6길 10(망원동 403-2) 망원 제1동 주민센터 1층	02-325-0964
	도화장난감대여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 4길 53(도화동 357-8)	02-712-2486
서울 서대문구	장난감대여서비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90 서대문구보건소 별관 우리들 1층	02-3217-9550
서울서초구	장난감도서관(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 46 5층	02-2155-8678
	장난감도서관 (신반포)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길 26신반포중학교 내 복합관 2층	02-596-9340
서울성동구	무지개 장난감세상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행당동 7)	02-2286-6091

지역명	센터명	주소	연락처
서울성북구	장난감이 좋아 sb장난감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10길 19(하월곡동 222-6)	02-918-8080~2 02-92 0-2343
서울송파구	놀이감대여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235송파어린이문화회관 3층 (오금동 50번지)	02-449-0505 (내선:5)
서울양천구	해누리대여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81해누리타운 3층(신정동)	02-2646-7790~1
	신정 희망 장난감도서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32길 1 신정1동주민센터 4층	02-2062-7794
	햇빛이 장난감도서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37	02-2699-7992
서울은평구	라운장난감나라 (구산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5가길 4(구산동)	02-351-3629/3630
	라운장난감나라 (은평구청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은평구청 본관 1층	02-355-3632
서울종로구	장난감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1길 6-3	02-735-0890
서울중구	키즈토이 신당점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길 5	02-2263-2626
	키즈토이 중림점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6길 16중림종합사회복지관 별관 4층	02-363-2627
부산진구	장난감도서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575-18(가야동)	051-936-7012
부산사상구	장난감 도서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1210번길 17	051-321-3389, 3390
울산남구	장난감대여관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251(달동 1322-9)	052-256-9508
	장난감대여관 (문수점)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산 5번지 문수국제양궁장 내	052-222-9511
경기고양시	화정대여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25	031-975-3314
	풍동대여점	경기도 일산동구 풍동 1127-4	031-902-8003
	영유아관산 장난감 PLAY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38-1 관산동 주민센터 1층	031-962-3316
	아이러브맘카페 (여성회관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48번지 여성회관 1층	031-972-8003
	아이러브맘카페 (탄현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031-913-6003
경기과천시	부림 아이러브맘 카페 장난감도서관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2 가족여성플라자 3층(부림동)	02-6925-2526
경기광명시	장난감도서관	경기도 광명시 철방산로 48 하안다목적복지회관 신관 3층(하안동)	02-899-0163
경기김포시	장난감대여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77-39	031-985-1901
경기부천시	장난감도서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 북사골문화센터 1층 (상동 394-2)	032-322-8686
	범박 아이러브맘카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 20번길 범박휴먼시아 1단지 관리동 2층	032-343-6694
	고강본동 아이러브맘카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 79 고강본동주민센터 신축건물 2층	032-681-6694
	심곡본동 아이러브맘카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24번길 55	032-656(7)-6694

지역명	센터명	주소	연락처
경기성남시	시청3호 아이사랑놀이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9층 (여수동 200)	031-756-1640
	수정 아이사랑놀이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회망로 506번길 21 (단대동 129), 3층	031-733-1640
	분당판교 아이사랑놀이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5번길 37 3층	031-8017-1640
	중원 아이사랑놀이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중원청소년수련관 덕동 4층	031-759-1640
	분당구청 아이사랑놀이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분당구청별관2층	031-715-1640
	양지 아이사랑놀이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83 양지동주민센터 5층	031-736-1640
	금광 아이사랑놀이터	경기도 성남시 산성대로 408번길 42(금광동), 성남시중원어린이도서관 별관 1층	031-743-1640
경기수원시	해피아이장난감나라 (매교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4번길 38(매교동)	031-236-5682~3
	해피아이장난감 나라(정자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24번길 47(정자동)	031-255-5614~5
	장난감도서관 - 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20번길 10(권선동)	031-233-5031~2
	창룡도서관 장난감도서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36 (우만동, 창룡도서관)	031-246-5614,5
	호매실도서관 장난감도서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69 (호매실동, 호매실도서관)	031-298-8458,9
	장난감도서관 조원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87번길 83 (조원동, 구 보훈회관)	031-248-9575,6
	장난감도서관 영통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759번길 29	준비중
경기시흥시	키움터 장난감도서관	경기도 시흥시 큰술로 27번길 2, 2층	031-431-6358
	신세계이마트희망장 난감도서관	경기도 시흥시 월곶해안로 161번길 7	070-7725-5534
경기안산시	아이맘카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249(고잔동)	031-481-8683~4
경기안양시	아이사랑 장난감나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 만안구청 옆	031-469-1241
경기양주시	양주시 장난감도서관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226(고암동)	031-8082- 4221~6
경기의왕시	꿈을 키우는 i-Story	경기 의왕시 덕장로 19, 4층 장난감 대여점 (청계동, 청계종합사회복지관 4층)	031-345-2196
경기의정부시	아이러브맘카페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8번길 덕암빌딩 3층	031-836-5010
경기이천시	씨앗장난감도서관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34길(구 시청뒷길1)	031-634-9842~3
경기파주시	파주희망 장난감도서관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34번지	031-953-9800
경기평택시	장난감나라	경기도 평택시 성동로 11번길 2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031-692-7705

지역명	센터명	주소	연락처
경기화성시	향남 아이러브맘카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남로 99-16번지 향남 한우몰마을 휴먼시아 6단지 관리동 3층	031-8059- 9925~6
	반송 아이러브맘카페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31 3층	031-831-5684
충남천안시	애들아,놀자! (두정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23 2층(두정동)	041-561-2821~2
	애들아,놀자! (청룡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19(구성동 314-4) 1층	041-561-2827
전북군산시	우리누리 장난감도서관	군산시 대학로 330(나운동 796번지 1~2층)	063-911-0756
경북포항시	장난감도서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뱃머릿길 39 포항시평생학습원 501호	054-256-2580,7
경남진주시	은하수동산 장난감은행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463번길 17(하대동)	055-749-2156
	진주시청 장난감은행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2층	055-749-3673
	무지개동산 장난감은행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 430 무지개동산 1층	055-749-2394
	충무공동 장난감은행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충의로 145 충무공동 주민센터	055-749-2155
경남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창원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20번길 11	055-287-5242
	장난감도서관 진해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40 여성회관	055-541-1912
	장난감도서관 마산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로 30 (산호동, 창원시여성회관 마산관내 1층)	055-225-3998



정부
육아지원
정책 안내

CHILD CARE SUPPORT POLICY

발행일 2016년 4월

발행처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육아정책연구소

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TEL 02-786-299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11 퍼스텍빌딩 1층/5층/7층/12층